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1년 4월 20일

국무총리직무대행
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**홍 남 기**

국 무 위 원
여성가족부장관 **정 영 애**

◉법률 제18099호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해소하고”를 “없애고”로 한다.

제3조제2호나목 중 “요구에 대한 불응을”을 “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6항 중 “등에 있어서의”를 “등에서”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모·부성”을 “모성·부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모·부성권”을 각각 “모성권·부성권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따라 성희롱”을 “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(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)을 대상으로 성희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점검결과를”을 “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
2.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(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)
3.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
4.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(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3(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

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, 내용,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제3항 중 “실시함에 있어서”를 “실시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46조의2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7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을 명시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며,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을 명시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(제31조).

나.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,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·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(제31조의2 신설).

다.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제31조의3 신설).

라.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함(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).

<법제처 제공>